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132 제출연월일: 2024. 6. 28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운영 시 나오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0조제4호의3 중 "기록하거나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"를 "기록한 자"로 한다.

제94조제2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·보존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90조제4호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9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90조(벌칙)			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				
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				
금에 처한다.				
1. ~ 4의2. (생 략)	1. ~ 4의2. (현행과 같음)			
4의3.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	4의3			
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				
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				
기록하거나 기록・보존하지	<u>기록한 자</u>			
아니한 자				
4의4. ~ 11. (생 략)	4의4. ~ 11. (현행과 같음)			
제94조(과태료) ① (생 략)	제9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			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②			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			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		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			
<u><신 설></u>	1의2.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			
	오염물질 측정결과를 기록・			
	<u>보존하지 아니한 자</u>			
<u>1의2</u> . (생 략)	<u>1의3</u> . (현행 제1호의2와 같음)			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			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			